

의안번호	2201507
의 퇴 인	민형배의원
회 답 일	2024.07.25.
추계번호	24C1901
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40조의4 (마약투약피해자의 치료보호)	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제59조제3항의 죄를 저지른자에 의하여 마약을 투약받은 피해자에 대하여 마약류 검출 여부를 판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40조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 있음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40조의4 (마약투약피해자의 치료보호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마약투약피해자의 치료보호(안 제40조의4)

- 개정안에 따라 동법 제59조제3항¹⁾의 죄를 저지른 자에 의하여 마약을 투약받은 피해자(이하 “마약투약피해자”)를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보호를 받게 할 경우 정부의 치료비 지원 대상자의 증가로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
1)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수출입·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·종자·종묘를 소지·소유한 자,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의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·종자·종묘를 관리·수수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를 한 자, 제3조제3호를 위반하여 헤로인이나 그 염류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·소유·관리·수수·운반·사용 또는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 등을 포함

- 현행 보건복지부는 ‘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사업’을 통해 25개소*의 치료보호기관을 지정하고 치료비(입원, 외래)를 지원하고 있음
- * 국립정신병원 5개소 및 시·도 지정 20개소
- 2024년 기준 중독자 치료비 지원에는 4.5억원, 치료보호기관 운영비(9개소, 9억원) 및 성과보상(2개소, 3억원) 12억원 및 치료보호기관 안전환경개선 5억원을 배정하였음
- 2022년 기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를 받은 인원은 421명으로, 2021년 280명 대비 약 50% 가량 증가하였음

[표 1]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를 받은 인원

(단위: 명)

구분	2018	2019	2020	2021	2022
환자수	267	260	143	280	421

자료: 보건복지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
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개정안에 따른 마약투약 피해자의 수와 그 중 치료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수 등이 정해져야 하나, 현재 관련 자료가 부재하고 개정안은 치료보호 기준을 하위법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
 - 검찰청은 매년 “마약류 범죄백서”를 발표하여 국내 마약류범죄 동향과 통계를 발표하고 있으나, 현재 마약류사범을 개정안에 따른 ‘마약투약피해자’ 여부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추가로 치료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수를 가늠하기 어려움
 - 또한 개정안은 마약투약피해자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보호 대상자를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현시점에 구체적인 대상자 범위를 지정할 수 없음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임슬기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슬기	02-6788-4740	sg.lim@assembly.go.kr